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① 성명	박경호 (한자)朴敬浩		② 생년월일	1941년 3월 26일
③ 주소	서울시 강서구 영창동 289-1 우성상가 1층 102호			
태 료 분 내 역	④ 부과기관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⑤ 납부통지서번호	0017309
	⑥ 고지받은 일자	2019. 8. 18	⑦ 과태료금액	500,000
	⑧ 과태료처분사유	낚시금지 구역 내에서 낚시행위		
과태료 처분에 관한 불복사유	<p>제는 지금 가족들과도 몇세년동안 오래 없이 혼자서 생활을 하고 있는 특례인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다녀온 직장에서도 퇴직을 하고 다리도 불편하다 보니까 취업을 하려고 해도 놓아주는 곳이 없어서 생계조차 하는 상황에 너무 상실감과 우울감이 느껴져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바람이나 씨리 잠시 나갔다가 낚시금지구역 이랑별 모르고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노년으로 시력도 좋지 않고 금지구역이랑 표지를 미처 놓지 못하여 벌어진 일인지 제가 알고 있었다면 절대로 그곳에서 낚시를 하기는 않았을 것입니다.</p> <p>지금 현재 살고 있는 곳도 제대로 된 집이 아닌 상가 향연 사무실 참고 같은 곳이라 환경지도 주방도 없이 몽하나 겨우 누운다 있는 상황이고 그마저도 지금 수입이 전혀 없어 30만원하는 월세마저 말려있는 상태 입니다. 제가 능력이 되다면 어찌되었건 제 잘못으로 인해 생긴 일이나 과태료를 다 납부하지만 지금 기본적인 생활조차 너무 힘들어 오히려 50만원이랑 그 돈을 납부할 형편이 못됩니다.</p> <p>이번 행정판 선처해 주시면 앞으로 다시는 규정을 어기지 않고 잘 살피며 살겠습니다.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선처 부탁드립니다.</p>			

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재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2월 23일

2019-12-23 11:08:22